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1028 |
|------|------|

2012. 10. 8.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가. 제안이유

-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업무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

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전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2. 기금 개요

- 조성규모 : 총 2,000억원(시와 민간이 공동 조성)
- 관리방법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관리
- 기금 운용
 - 사회적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지원
 -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
 - 사회·환경·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 기금조성계획(안) : 총 2,000억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3. 위탁주요내용

- 위탁기간 : 2년(2012. 12 ~ 2014. 11)
- 위탁사업
 - 사회적 배려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재무적 안정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지원
 - 소셜하우징사업 :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택제공, 건설분야 사회적기업 육성하여 고용확대
 - 빈곤·차별·공해 등 다양한 현안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별 용자
- 위탁사무
 - 사회투자기금 사업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신청서 접수
 - 신청인(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평가
 - 사업대상자의 선정에 따른 제반업무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 성과분석
 - 사회투자기금의 관리, 용자금의 회수 및 사후관리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투자기금은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금융으로써 사회적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임.
- 또한,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사회투자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수행 곤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회적금융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 예정인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전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나. 사회투자기금의 설치·운영 개요

- 시는 사회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과 다양한 사회적금융에 대한 자금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자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기로 계획해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기금은 관할지역내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활동가,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사업, 장애인·여성·다문화가정·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임.
-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500억원은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나머지 500

역원은 기업과 금융기관 및 시민들의 기부와 협찬 등 민간모집을 통해 조성할 계획임¹⁾).

- 이러한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수반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상²⁾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행위를 할 수 없어 기금을 운용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기금의 모집과 운용을 맡도록 할 계획임.

다. 민간위탁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 1990년대 유럽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투자³⁾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것과는 달리 사회투자는 경제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 취업, 고용인프

1) 시는 당초 시와 민간이 각각 1,500억원씩 모두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과 민간의 기부금 모집 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2,000억원 수준으로 기금조성계획을 조정하였음.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이하 생략>

3) 한국도시연구소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회투자는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지출을 의미함.

라,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출 등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임.

- 국내에서도 고용없는 성장,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교육과 고용, 복지를 연계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나 법인의 전문성과 역량,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기금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적금융이므로, 사회투자나 사회적금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 다양한 사업 수행의 경험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특히,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의 적극적 기부금 모집 등을 위해서는 시의 직접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법·제도적 한계가 있어, 현재의 사업 계획대로라면 사실상 민간위탁 방식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 각종 사회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의 경우 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기금을 운용해본 경험이 사실상 전무해 운영초기 많은 혼란이 예상될 수 있음⁴⁾(참고자료).

4) 시가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회투자 단체 10여곳의 연간 사업비 규모는 1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수탁예정 단체간에 충분한 경쟁이 확보되기 어렵고, 기금 업무를 수행할 민간단체나 기관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 밖에, 시는 위탁수수료로 연간 사업비의 2% 정도를 지급할 예정⁵⁾이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금액이 200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모집금액의 10%까지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수십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라. 종합의견

-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통합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사회적,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인 기금의 효과적인 관리·운용은 기금설치·운용의 전(全)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법·제도적 제약에 따라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운용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노

5) 시는 2013년 예산에 위탁수수료로 35억원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며, 현재 계획처럼 2014년 2,000억원의 기금 모집이 완료될 경우 4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력이 요구됨.

- 또한,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수탁 예정 단체들 사이에 충분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위탁이 개시된 이후 사업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러 특성들을 이해해 최초 수탁기관 선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현재 상황에서 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금을 관리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선불리 기금 전체 또는 일부를 나눠주 기식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직접 관리 혹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위탁관리해 기금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확인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시 산 하 출연기관을 통한 운영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제240회 임시회 당시 논의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민영화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 기금조성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기금 조성 규모를 조정하는데 동의하고자 함.
- 시 혹은 시의 출연기관 등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은?

- 관련법령에 따라 시와 출연기관은 민간기부금 모집이 불가능하고,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기금을 운용할 만한 민간단체나 기관이 존재하나?
 - 국내에 이미 10여년 이상 사회투자 활동을 수행해온 단체들이 있고, 11개 단체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V. 토론요지 :

-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계획이 과다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 운용 예정단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찬성6명, 반대1명, 기권1명)

VII. 소수의견 요지 :

-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기금 조성계획, 민간단체 위탁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028 |
|----------|---------|

제안년월일 : 2012년 10월 8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사회투자기금 조성계획이 서울시의 재정상황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사회투자기금 조성규모를 1,000억원으로 조정함.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의 주요내용 중 나. 기금 개요의 조성규모(안)과 라. 주요 위탁내용의 기금조성계획(안)의 “총 2,000억원”을 각각 “총 1,000억원”으로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가.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업무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 나.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전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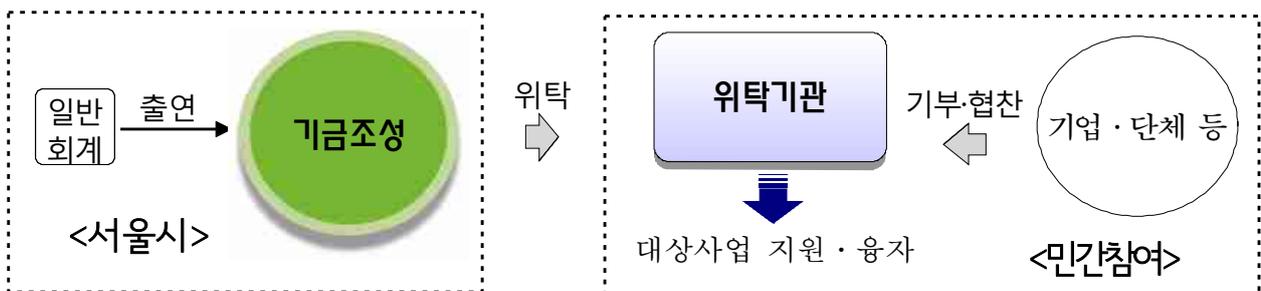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나. 기금 개요

- 조성규모(안) : 총 1,000억원(市와 민간이 공동 조성)
- 관리방법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관리



○ 기금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지원
-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
- 사회·환경·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다. 기금 운용

○ 사업단계별 공공성 확보

- **공모단계** : 수탁기관 선정시 사업계획의 공공성 중점반영 평가
 - 수탁기관 선정시 시의회 참여방안 마련으로 공공성 확보
- **운용단계** : 기금운용심의기능 강화 및 대상기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시의원이 적극 참여하여 공정성 강화
 - 사업의 공익적 효과 등 사회적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기준 마련
- **사후관리 단계** : 자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보고를 통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운영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로 투명성 강화

○ 중간지원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중간지원기관** :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소규모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단체 등
- **추진방안** : 역량을 갖춘 복수의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를 지정, 지정된 중간지원기관이 기부금 등으로 자체사업비 마련하고 추가사업비를 시에 신청시 사회투자기금을 매칭 용자
- **활용방안** : 중간지원기관을 통해서 기부금 등을 확대하고, 사회투자기금 시너지 효과 극대화

라. 주요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2. 12 ~ 2014. 1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업
 - 사회적 배려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재무적 안정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지원
 - 소셜하우징사업 :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택제공, 건설분야 사회적기업 육성하여 고용확대
 - 빈곤·차별·공해 등 다양한 현안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별 용자
- 위탁사무
 - 사회투자기금 사업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신청서 접수
 - 신청인(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평가
 - 사업대상자의 선정에 따른 제반업무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 성과분석
 - 사회투자기금의 관리, 용자금의 회수 및 사후관리
- 기금조성계획(안) : 총 1,000억원(시 일반회계 및 민간 기부금 등 조성)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투자기금은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금융으로써 사회적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임
- 또한,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사회투자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市에서 직접 수행 곤란